

「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인재육성과장)

가. 제안이유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나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(안 제6조)
- 라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제9조)
- 마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바.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권리와 편의 보장 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
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
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군수의 책무로 정하였고,
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,
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사업 추진을
지원할 수 있도록 함

○ 검토결과,

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
법률적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,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